

의안번호	2211677
의 퇴 인	박지혜 의원
회 답 일	2025. 10. 13.
추 계 번호	25A39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 (사업양수및합병의분할합병등), 제12조제1항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제2항 (송전배전요금의비리요금등), 제16조제2항 (전기의 공급약관), 제18조제3항 (전기품질의 유지), 제23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7조의2제5항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3조제2항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제4항 (차액계약), 제43조제3항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제3항 (중개시장운영규칙), 제53조제1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호·제15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기위원회를 <u>심의기구</u> 에서 <u>심의·의결기구</u> 로 변경: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및 합병, 전기사업자의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 현행법상 전기위원회의 <u>심의</u> 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u>심의·의결</u> 을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53조제2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4조의4 신설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법률에 명시 1.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7조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 (사업의양수및합의분할합병등), 제12조제1항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제2항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요금등), 제16조제2항 (전기의 공급약관), 제18조제3항 (전기품질의 유지), 제23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제1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27조의2제5항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3조제2항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제4항 (차액계약), 제43조제3항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제3항 (중개시장운영규칙), 제53조제1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호·제15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3조제2항 (전기위원회의 설치)	
3	안 제54조의4 신설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전기위원회를 현행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의 원칙을 명시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 개정안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인력이 증원되거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더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①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②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사, ③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이 경우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유관부서의 사무가 전기위원회로 이관되고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이 증원되는 등 인력이 순증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와 사업비 증가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업무 이관 및 인력 순증 규모와, 확대 또는 신규 실시될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따라 전기위원회 사무조직이 확대된다고 전제하면,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에서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와 인력이 전기위원회 사무국으로 얼마나 이관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순증 인원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하게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한 의안번호 제221057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¹⁾에 대하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우 소요되는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1) 2025.5.2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